



13805 과천시 희망길 36

과천외고 제2026-56호

가정통신문

전화 : 070-4881-3400

교무부 : 070-4881-3451

행정실 : 02-6677-5726

불법찬조금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덕내 평안을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예방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전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9
- 시기별 집중신고기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갑질행위(7월), 물품·공사 분야(7~8월), 불법찬조금 신고(5월/10월)

2026년 4월 2일

과 천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